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 근거가 마련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의 세부적 내용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 나. 포상금 지급대상을 법률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안 제22조의16)
- 다.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 신고포상금 예산반영 요구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13조의3제8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서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2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6(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법 제23조제1

항 제5호”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	법 제37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200	250	300
다.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	법 제37조제1항제3호	200	250	300
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60	80	100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2호	60	80	100
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3호	60	80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2조의2(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13조의3제8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서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u>
<u><신 설></u>	제22조의16(포상금의 지급) ① <u>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하 생략)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산업경제과	
연 락 처	(044) 201-6735